

라. 제2.3조에 따라 체결될 투자에 관한 협정

마. 제5.1조에 규정된 이 기본협정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 그리고

사.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의 맥락에서 당사국들이 컨센서스로 상호 합의하고 체결할 수 있는 그밖의 협정

2. 이 기본협정에 달리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기본협정 또는 그에 따라 취하여진 어떠한 행위도 당사국이 당사자인 기존의 협정상의 그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무효화하지 아니한다.

3. 이 기본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이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및/또는 경제협력의 그밖의 분야와 관련하여 양자 또는 복수국간 협정을 다른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및/또는 대한민국과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기본협정의 규정은 이러한 양자 또는 복수국간 협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장

자유화

제 2.1 조

상품무역

1. 당사국들은 이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상의 일반품목군에 관한 규정·양허표 및 프로그램에 따라, 당사국들 간의 실질적으로 모든 상품무역에 대하여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인 상거래규정(필요한 경우, 1994년도 GATT 제24조 제8항 나호에서 허용된 것은 제외한다)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철폐한다.

2. 이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가. 점진적인 관세 축소 및/또는 철폐 프로그램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자세한 규칙
- 나. 원산지 규칙
- 다. 양허의 수정
- 라. 비관세 조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그리고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 마. 긴급수입제한 조치. 그리고
- 바. 세계무역기구 규율과 비관세장벽의 축소 및 철폐

제 2.2 조 서비스무역

1. 당사국들은 GATS 제5조와 합치하게 상당한 분야별 대상범위에서 당사국들 간 서비스 무역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국들은 서비스 무역의 점진적인 자유화에 관한 협상을 개시한다. 이러한 자유화는 다음을 지향한다.

- 가. 제1항에 따라 대상이 되는 분야에 한해서 제3항에서 규정된 협정의 발효시점 또는 합의된 시한에 기초하여 다음을 통해 당사국들 간 실질적으로 모든 차별의 제거 또는 철폐의 규정
 - (1) 기존 차별조치의 철폐. 그리고/또는
 - (2) 당사국들 간의 서비스무역에 관하여 신규 또는 더욱 차별적인 조치의 금지

단, GATS 제11조·제12조·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허용되는 조치는 예외로 한다.

- 나. GATS에 따라 당사국들이 약속한 것 이상으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의 깊이 및 범위의 확대. 그리고
- 다. 당사국들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 및 배급을 다양화할 뿐 아니라 효율성과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당사국들 간 서비스 협력의 강화

3. 당사국들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협상을 종료할 목적으로 2006년 초에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에 관한 협상을 개시한다.

제 2.3 조 투 자

1. 당사국들은 사업 친화적인 환경과 함께 자유롭고, 원활하고, 투명하고 경쟁적인 투자 제도를 창설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국들은 투자제도의 자유화에 관한 협상을 개시한다. 이러한 협상은 다음을 지향한다.

가. 투자제도의 점진적인 자유화

나. 투자 협력의 강화, 투자의 촉진, 그리고 투자 규칙 및 규정의 투명성 증진. 그리고

다. 투자제도하에서의 보호의 제공

3. 당사국들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협상을 종료할 목적으로 2006년 초에 투자에 관한 협정에 관한 협상을 개시한다.

제 2.4 조 최혜국 대우

대한민국은 이 기본협정 발효 즉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아닌 모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에게 세계무역기구 규칙 및 규율에 합치하게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

제 3 장 경제협력